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

수 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
【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】

참 조 시설 관리담당

제 목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강화 법안에 대한 조합
 건의의견 알림 및 추가의견 제출 요청 **[긴급]**

1. 한공조 2018-238호[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, '18.6.12] 관련입니다.

2. 우리 조합에서는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이 개정 공포('18.6.12) 됨에 따라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정부 하위법령 개정 시 배출시설 지도·점검 7일 전 업체에 사전통보 의무화,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정 시 2차례 이상 측정·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.

3. 이에 동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조합 건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사용중지명령 처분이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 사의 의견을 추가로 요청드리오니 붙임의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'18.6.21(목)까지 조합으로 송부(FAX : 02-718-717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조합 건의의견 1부.
2.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.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



담당 김광수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

협조자

시행 한공조 - 247호 (2018. 6. 20) 접수

우 07573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rema.kr
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부과사항에 대한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건의의견

법 개정내용	시행규칙 개정 건의(안)	건의 사유
<p>제16조(개선명령·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)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</p>	<p>제8조의2(사용중지 명령 등)</p> <p>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을 지도·점검 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7일 전까지 점검 등의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</p>	<p>○ 배출시설의 권리 및 영업 비밀 침해 우려</p> <p>- 불시 측정으로 인한 업체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유출이 우려되며, 측정 대상 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점검일자, 사유 등 사전 통보 필요</p>

법 개정내용	시행규칙 개정 건의(안)	건의 사유
<p>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(이하 “개선명령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</p>	<p>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2차례 이상 측정·분석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 이내로 초과한 배출시설 2. 공익적 목적의 배출시설(폐기물 소각시설 포함) 	<p>○ 배출허용기준 판정 정확도 향상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정 시 2차례 이상 측정·분석하여 정확도 향상 및 측정·분석 오차로 인한 사용중지처분 발생 방지 필요 <p>○ 반입폐기물 성상에 따라 결정되는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고려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반시설이자 공익적 목적의 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의 특성상 반입폐기물 성상이 매우 불규칙하며, 성분 파악이 곤란하고, 소각 시 폐기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분들 중 페놀, 벤젠 등 특정 유기화합물로 인한 다이옥신의 일시적인 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필요

첨 부 :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현황 1부. 끝.

〈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현황 〉

13~17년 불시점검 기준

년도	사업장	폐기물 종류	분석결과 (ng-TEQ/Sm ³)	배출허용기준 (ng-TEQ/Sm ³)	초과비율
2013	A사업장	일반	13.8	5	275%
2013	B사업장	지정	1.6	1	161%
2013	C사업장	일반	9.0	5	180%
2013	D사업장	일반	19.5	10	195%
2013	E사업장	일반	98.5	5	1970%
2013	F사업장	일반	16.4	10	164%
2013	G사업장	일반	6.0	5	120%
2013	H사업장	일반	7.0	5	140%
2013	I사업장	지정	1.5	1	151%
2014	B사업장	지정	2.2	1	217%
2014	F사업장	일반	33.5	10	335%
2014	J사업장	일반	583.4	5	11668%
2014	K사업장	일반	27.9	10	279%
2014	L사업장	일반	21.0	5	420%
2014	M사업장	일반	23.8	5	477%
2014	N사업장	일반	5.9	1	590%
2014	O사업장	일반	13.8	10	138%
2014	P사업장	일반	1.2	1	122%
2014	Q사업장	일반	0.2	0.1	245%
2015	F사업장	일반	46.5	10	465%
2015	J사업장	일반	11.7	5	234%
2015	N사업장	일반	13.7	1	1369%
2015	N사업장	일반	1.8	1	183%
2015	P사업장	일반	1.4	1	144%
2015	Q사업장	일반	0.2	0.1	162%
2015	R사업장	일반	208.3	10	2083%
2015	S사업장	일반	8.1	5	162%
2015	T사업장	지정	2.4	1	239%
2015	V사업장	지정	2.8	1	278%
2015	W사업장	일반	47.6	10	476%
2015	W사업장	일반	28.8	10	288%
2015	X사업장	일반	8.1	5	162%
2015	Y사업장	일반	20.1	10	201%
2016	J사업장	일반	7.6	5	152%
2016	N사업장	일반	3.7	1	373%
2016	U사업장	지정	5.7	5	114%
2016	W사업장	일반	15.0	10	150%
2016	ZA사업장	일반	1.3	1	128%
2016	ZB사업장	일반	71.2	5	1424%
2016	ZC사업장	일반	11.9	5	238%
2016	ZD사업장	일반	2.3	1	235%
2016	ZE사업장	일반	7.1	5	142%
2016	ZF사업장	일반	6.0	5	119%
2016	ZG사업장	일반	64.7	5	1293%
2016	Z사업장	일반	18.0	10	180%
2017	ZH사업장	일반	0.6	0.1	550%
2017	ZI사업장	일반	15.4	5	308%
2017	ZJ사업장	일반	24.9	5	498%

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일부개정안 공포에 대한 건의의견 작성양식

건의의견	사유

2018. 6. .

업 체 명 :

담 당 자 :

연 락 처 :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귀중